「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3차)
(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)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내수 및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운송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도모

○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통해 시민 정주여건 개선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편의 증진 기여

○ 화물자동차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, 주거지 인근 대형 화물자동차의 주거환경 침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필요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

○ 위　　치 :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093번지 일원

○ 대　　상 : 연면적 A = 500㎡(건물 1동, 지상 2층)

○ 기준가격 : 13,000백만원(건물 1동 및 차고지 조성)

- 관리동 신축 1,600백만원, 토목 공사 및 시설부대비 등 11,400백만원

○ 총사업비 : 19,800백만원(도비(전환) 9,100백만원, 시비 10,700백만원)

-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6,800백만원

- 관리동 신축 1,600백만원

- 토목공사 등 10,600백만원, 시설부대비 800백만원

○ 사업기간 : 2023 ~ 2027년

○ 주요시설 : 주차면수 388대(화물 280, 승용 108), 관리동 조성

○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

-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: ‘23. 10. ~ ‘24. 12.
-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: ‘25. 4. ~ ‘25. 12.

  ※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 (‘25. 9. 1. ~ ‘25. 9. 19.)

-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: ‘25. 4. ~ 6.
- 2026년도 전환사업 예산 신청 : ‘25. 4. ~ 6.
-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: ‘25. 10. ~ 12.
-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보상 : ‘26. 1. ~ 3.
- 실시설계 용역 : ‘26. 3. ~ 7.
- 공사 착공 및 준공 : ‘26. 8. ~ ‘27. 8.

○ **근거법령**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 제9호 및 제45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3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	1건	500	13,000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1건	500	13,000

취득 재산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 량(㎡)					
총계			500	13,000				
취득	건물	선산읍 죽장리 1093 일원	500	13,000	2027년	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	구미시	

위 치 도

□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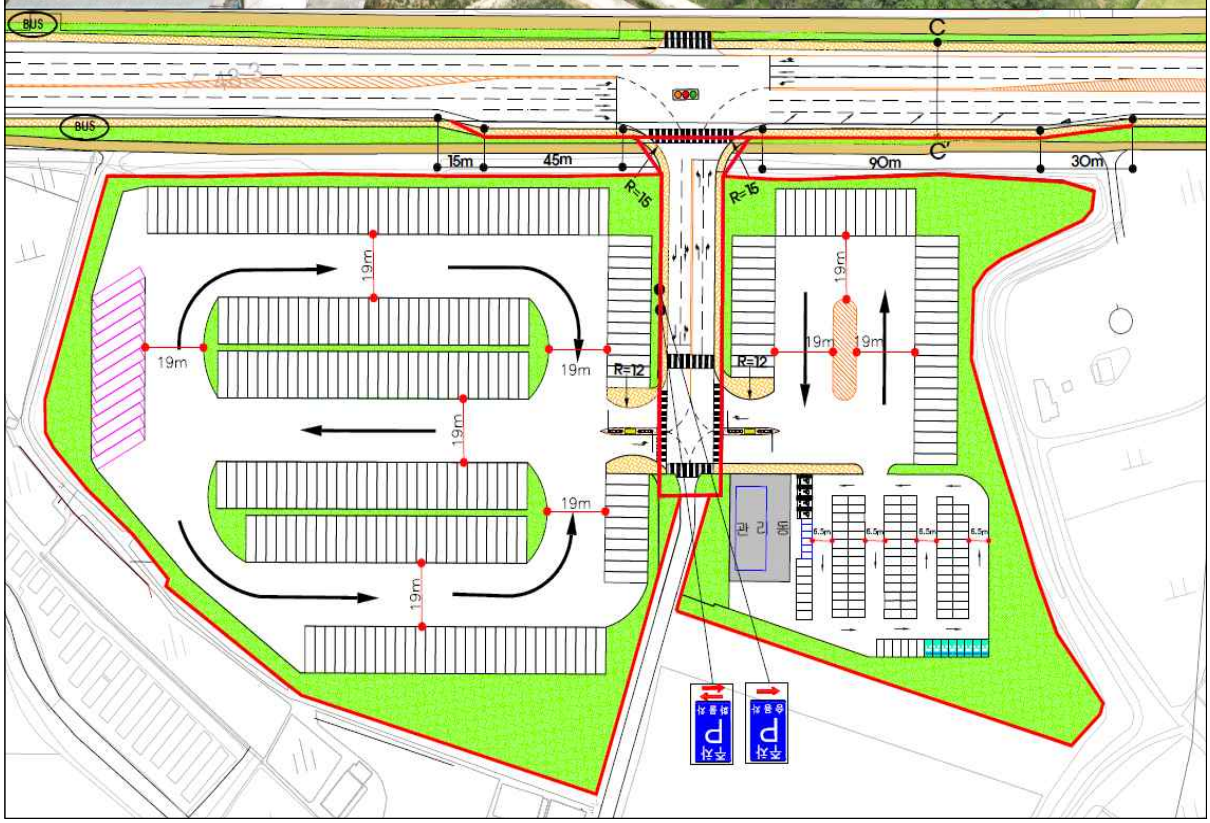

4. 검토의견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관리계획안은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「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(수시-3차) (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)」건과는 별개로 공영차고지 내 관리동 신축에 대해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임.

-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화물 운수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, 상당한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만큼 중·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.

- 또한, 향후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, 도시계획 절차, 실시설계 등 단계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, 총사업비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기초조사 및 설계최적화·잦은 설계 변경 억제 등 비용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아울러,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할 경우, 재정 부담·취득 필요성·운영 계획 등의 충분한 검토에 제약이 발생함. 이러한 이유로 두 안건을 한 회기에서 함께 다루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에도, 다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은 절차적 미비로 볼 수 있음.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.